

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 연구

정상호(서원대학교)

논문 요약

공민의 개념 연구는 체제와 발전경로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줄 수 있다. 남북한,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공민이라는 개념은 근대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주요한 법적 용어이거나 생활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공민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동적 근대화 과정과 상호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실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민 개념이 서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적 개념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이행과 공고화를 거치면서 공민이라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흡수 통합되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과 일본에서 공민은 현재까지 부단히 변성하여 온 법적, 제도적 개념이다. 한편, 중국에서 공민은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방 및 경제성장의 속도에 상응해 시민 개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민 개념의 소멸과 지속을 가져온 원인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화 운동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주목하였다.

주제어: 공민, 시민, 개념사, 코젤렉, 동아시아, 황민, 신민

I. 공민 개념의 비교 연구의 의의

응축된 사회과학 언어로써 개념의 소통 기능, 즉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와 연속성을 드러내 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최근 개념사 연구가 학계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동아시아 지역, 즉 남북한,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민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점에서 개념사 연구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민의 개념 연구는 체제와 발전경로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줄 수 있다.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는 한자와 유교를 사용하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근대 이전부터 빈번한 문물 및 인사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과 전쟁을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개념사 연구가 미국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먼저 번성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이러한 역사적, 공간적 경험의 공유와 밀접한 상호연계성이다. 동아시아 4국 모두에서 공민이라는 개념은 근대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주요한 법적 용어이거나 생활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공민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동적 근대화 과정과 상호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둘째, 공민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개념의 역동적 변화 과정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나 시민과 같은 개념의 역사는 정치적 주장의 역사 또는 그것과 연관된 논쟁의 역사이다.¹⁾ 공민과 시민은 서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적 개념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이행과 공고화를 거치면서 공민이라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흡수 통합되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과 일본에서 공민은 현재까지 무단히 번성하여 온 법적,

1) Ball, Terence.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Blackwell, 1988, p. 18.

제도적 개념이다. 한편, 중국에서 공민은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방 및 경제성장의 속도에 상응해 시민 개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들 국가에서 한때 함께 사용되었던 공민이라는 개념은 상이한 운명에 처해있다. 개념의 소멸과 지속을 가져온 원인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이다.

끝으로 공민이 시민보다 자율성과 공동체 정신을 내재한 적합한 용어라는 주장의 근거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조혜인은 citizen을 시민으로, civil society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번역이며, 공민(公民)과 공민사회(公民社會)가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 근거로 도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민이나 시민사회라는 용어로는 그것의 본질인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민과 시민사회보다 더 일찍 보편적으로 번역되어 통용되었던 공민과 공민사회라는 개념의 내포와 의미 변화의 원인을 비교의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의 공민 개념

1. 조선과 일제시대: 신민(臣民)으로서의 공민

우선 한국에서 공민 개념은 근대화 이전 조선시대부터 등장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中宗實錄』 9권에 따르면 조선초기의 국역체제는 양천제(良踐制)를 기반으로 양인층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조선시대의

2) 그는 “시민에서의 市의 의미를 이차적으로 확대시켜서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홍보하는 방식은 우리말에서 ‘시’라는 한자어는 너무도 도시를 강하게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민이라는 번역으로 교정해 가는 것이 상책”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혜인,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 서울: 나남, 2009, pp. 23~25.

전체 인민은 국가지배에 있는 공민(公民)으로서 양인(良人), 그리고 양인이나 지배기구에 종속된 사민(私民)으로서의 천민(賤民)으로 편제되었다. 즉 공민은 국역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자영농민을 지칭하는 양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³⁾ 또한 납세자로서 공민은 그 대가로 관직 참여권이나 법률적 보호, 구료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최배근은 조선말의 농촌경제를 ‘공동체적 사회질서’로 양민의 성격을 ‘공민’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일반 양인들이 “공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국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⁴⁾ 그렇지만 조선시대 공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아테네 시민의 그것과 달리 비대칭적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선후기에 이룰수록 권리의 측면이 약화되고 의무만이 강조되어 공민은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무권리한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하였다.⁵⁾

일본의 식민통치는 개념 세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반도라는 특정 영토의 주권 재민이라는 뜻의 국민 개념은 1910년 이후 해방되기까지 자취를 감추었다.⁶⁾ 공민 또한 일체의 주권이 박탈된 식민 상황에서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요소로 삼고 있는 시민 개념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적이고 차별적인 참정권의 의미로 제한되었다.⁷⁾ 문세영이 편찬한 한글 최초 사전인 『일본 조선어사전-초판본』(1938)이나 『일본 조선어사전-增補版』(1948)에는 공민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공민(公民) ① 국가에 붙어서 독립으로 생활하여 가는 자유민.

② 부, 군, 읍, 면을 구성하는 주민중 공민권을 가진 사람(142쪽)

3)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 25-26.

4) 최배근,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公民’의 역사적 성격.” 『경제와 사회』(통권)19호, 1993, p. 70.

5)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2005, p. 206.

6)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1900-1904년 동포 개념의 추이.” 『근대개항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서울: 소명출판, 2006, p. 52.

7)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2010, pp. 199-200.

공민권(公民權) 부근읍면의 시정(施政)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곧 삼십오 세 이상의 남자로 한 집을 가지고 이태이상 거기에 살고 직접 국세 이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142쪽).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공민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1920~30년대에 시행되었던 일제의 식민정책, 특히 사이토 마코도(齋藤實) 총독이 시행하였던 문화정책과 자치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1920년대 조선 총독을 역임하였던 사이토는 전임자들의 무단통치와는 달리 문화정책과 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치 제도는 대의기구나 행정기구가 아닌 지방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으며, 총독이 대의원 중 다수를 임명하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1920년 12월 첫 선거가 실시되자 기권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서울과 지방에 걸쳐 전국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유권자는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나 조세(서울의 경우 5엔) 납부자로 제한되었다.⁸⁾ 선거 결과 서울, 인천, 평양 등 12개 부에서는 134명의 일본인과 56명의 한국인이, 20개 군 지역에서는 111명의 한국인과 101명의 일본인이 당선되었다. 1923년 선거에서는 조선인 유권자의 관심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한인 유권자 4,950명 중 3,200명, 일본인 4,360명 중 3,40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선거비용도 최고 득점자는 1만 엔, 평균 2천 엔을 소비할 정도로 열성이었다.⁹⁾ 조선 총독부는 지방의회가 권한과 업무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 조선의 자치가 원래 의도대로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동아일보』, 1923년 11월 22일자). 식민 시대 자치를 표방한 공민의 투표권 행사는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1933년에 실시된 도의원 선거에서 총 422명 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선출직 283명을 두고 한국인 922명이 입후보하여 242명이 당선되었고, 일본인은 93명이 입후보 하여 42명이 당선되었다. 나머지 3분의

8) 손정목, 『한국 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92, pp. 185~187.

9)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I』,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382~384.

1인 임명직은 한국인 55명 일본인이 84명이었다. 이들은 부의장 선출, 법안 상정 등 지방자치의 최고기관으로서 자문과 의결기능을 가지나 여전히 도시사가 완전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자문기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언론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식민 시대의 공민은 내부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자각이 아니라 자치를 명분으로 한 식민지 권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호명된 소수 계층에 한정된 개념이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초로 부의회가 시행되었던 1920년 조선의 인구는 17,289천명인데, 이 중 일본인은 34만 8천명이었다.¹⁰⁾ 경성이 속한 경기도의 인구는 1,785,675(10.3%)명인데, 이 중 서울의 인구는 210,709명이었다. 당시 경성의 경우 한인 유권자는 4,950명이고, 일본인 유권자가 4,360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민의 비율은 경성 주민의 2.3%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공민이라는 개념은 형식적이고 외삽적인 조선총독부의 자치 정책의 부산물이었다. 식민지에서 시민권의 본질적 요소인 참정권은 때로 여러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식민 본국에 의하여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자치와 참정권은 근대 공민 개념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기에는 하나의 치장(window dressing) 또는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식민시대의 공민은 서구의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시민도 자치 속에서 참정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였던 다른 식민지 국가의 국민도 아니었다. 당시 공민과 공민권은 공적 권리를 갖고 있는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적으로 친일 자산가나 지역 유지를 뜻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식민 시대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공민 개념이 참정권과 조세의 법적 개념에서 처음으로 교과교육의 내용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초기 단계부터 학과목으로서 공민과를 설치하였다. 조선총독

10) 이하 식민 시대의 주요 통계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광복이전 통계(1908-1943)>를 활용하였다(http://www.kosis.kr/feature/feature_03List.jsp).

부 설립 이후 시행된 교육과정 변천은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1년 8월22일에서 1922년 2월3일에 이르는 제1차 조선교육령 단계에 사회과 과목은 도덕에 해당되는 수신과(修身科)와 ‘법제·경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조선교육령이 전면에 내세운 교육 목표는 총량한 국민의 양성이었다. 여기서 총량한 국민은 곧 臣民을 의미했다.

제2차 교육령 시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으나 1932년 일제는 식민지에서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영역의 교육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등보통학교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法制經濟’를 폐지하고 새로이 ‘公民’과목을 설치했다.¹¹⁾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써 ‘실제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교수하기 위해서 종래의 전문적인 지식의 주입에 흐르기 쉬운 「법제 및 경제」과목을 폐하고 「공민과」를 신설하여 일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을 배양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 저의는 「법제 및 경제」라는 학과명이 전문적 지식을 교수하기 쉬운 명칭이라고 하여 「공민과」로 개정시킴으로써 일본의 총량한 공민 즉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과 태도를 더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국신민은 臣民의 덕목에 군국주의적 실천 덕목이 덧붙여 일본 천황제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희생을 요구받던 국민을 의미한다.¹²⁾ 즉, 최소한 외양상으로는 기존의 법과 경제 과목내용이 보다 완화되고 실생활에 연관된 형태로 공민과목에 흡수, 전달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로 인해 노골적인 황국신민

11) 박한영,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 -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권 2호, 2010, pp. 11~12.

12) 김정인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교육계에서는 공민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하나는, 공민교육이 곧 국민교육이라는 입장이다. 공민교육이 공공 생활에서의 知德 겸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교육 역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덕을 국민에게 교양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양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민교육은 국가교육으로서 신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일본 신민이 되는 것이므로, 공민 역시 帝國 신민의 일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초등교육계의 주류는 후자, 즉 국가 통제적 요소가 강한 공민교육론이었다. 개인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동양 문화를 융합하고 시대적 식견’을 갖춘 국가공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민적 가치나 규범보다는 충군애국의 신민적 가치가 더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통권 122호, 2012를 참조.

화교육으로 교육전반의 성격이 변화되던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공민과마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1943년 이후로는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 중 도덕이 중심이 된 수신과만이 존치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¹³⁾

2. 해방 이후 사회과(社會科)의 도입과 공민 개념의 변화

1946년 미군정은 일제의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일제의 수신과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민, 역사, 지리를 한데 묶어 사회과로 통합하였다. 사회과의 신설과 더불어 공민과의 내용 변화는 이러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생 독립국 조선에 체계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문교부에서 발간한 『사회생활 :교사용』(1957)을 보면 공민과의 목표와 구성에 대하여 “사회생활과는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새 나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하여 온 교과로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성한 교과이며, 사회생활과는 지리, 역사, 공민, 내지 도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⁴⁾ 즉, 1946년 미군정에서 시작된 미국식 사회과 교육의 도입 특히 공민과는 해방 후 최초의 민주적인 시민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공민과 교과는 5.16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기 이전까지 초등과 중등 1,2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수업이 배정되었다.

<표 1> 초등학교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1945.9)

학년 \ 교과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산술	이과	음악 체육	계
1~3	2	8	1	5	1	3	20
4	2	7	1	4	3	3	20
5~6	2	6	2	3	2	3	18
고등과	2	6	2	2	2	3	17

출처: http://www.danyang.chungbuk.kr/_uploadfiles/_resource/danyangpaper.

13) 박한영(2010), 위의 논문, pp. 19~20.

14) 문교부, 『(국민학교) 사회생활 :교사용 /3』, 1957.

이제부터는 공민 교과서와 참고서에 실린 공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개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정부 수립 직후 발간된 교과서에 기술된 공민의 개념을 살펴보자(이하 고딕은 필자).

공민이란 사회의 일원, 공동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사람을 의미한다. **참다운 공민**은 자기가 공동단체의 일원임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러 과제에 대하여 짐짓 모르는 체하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 없다. 참다운 공민은 사회가 주는 여러 과제의 웅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용감히 해결하며 개선할 것은 담대히 개선하려고 하는 국민이다.¹⁵⁾

훌륭한 공민이란 국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여 그에 따르는 일을 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¹⁶⁾

“공민의 뜻은 사회생활의 유래와 공동생활의 의의를 잘 알아 완전한 사회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어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공민이라 한다. 사회는 이러한 다수의 공민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니 공민은 그 사회에 대하여 그 사회가 각 성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청구하고 주장할 일정한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 같이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공민은 또 그 사회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의무를 갖고 있다.¹⁷⁾

이 시기 공민의 개념 정의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민을 시민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식민 시기와 달리 적극적 참여의식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상윤이 저술한 『중등공민 : 공동생활』(1955)에는 공민의 권리 특히 청구권을 명시한 점과 사회의 발전 의무를 동시에 기술한 것은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15) 최재희, 『(중등 사회 생활과) 공동생활: 공민부분/1학년용』, 探求堂, 1950, pp. 8-9.

16) 이상선, 『(중등 사회 생활과) 경제생활: 공민부분/3학년용』, 探求堂, 1950, p. 147.

17) 현상윤, 『(사회생활과) 중등공민: 공동생활』, 民衆書館, 1955, p. 12.

인식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공민의 관계는 수평적이거나 대등하지는 않다. 해당 자료에서 국가와 가족, 개인의 관계는 위계적이며 종속적이다. 해당 교과서의 <가정과 국가> 단원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국가의 자녀이며 반드시 어느 국가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과 국가라는 사회에는 실로 나면서부터 속해 있는 터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¹⁸⁾ 보다 흥미로운 점은 소크라테스를 사례로 거론하면서 ‘좋은 공민’의 조건으로서 “착한 공민, 참다운 공민, 성실한 공민”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일본 식민시대의 공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¹⁹⁾ 이상선 또한 이상적, 경제적 공민의 조건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권한에 충성’을 다하며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나라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며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3. 공민에서 시민으로: 4·19 혁명으로 인한 개념의 단절적 변화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진화는 피지배층의 국가와의 지난한 투쟁과 협상의 산물이거나 정당이나 사회운동을 통한 시민의식의 집단적 자각의 결과이다.²¹⁾ 개념의 역사 역시 정치적, 역사적 성과와 진전에 힘입어,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도래하면서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4·19 이후 처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래(傳來)의 공민이

18) 최재희(1950), 위의 논문, p. 12.

19) 일제 시대의 선량하고 유능한 공민이란 첫째,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자각하며 사는 사람, 둘째, 정치상 윤리적 규범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 셋째,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그 공공적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 넷째, 자신의 복리와 사회공공의 복리를 잘 조화시키고 사회봉사의 관념이 강한 사람, 다섯째,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공공복리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 등을 의미했다. 문부성 보통학무국·실업학무국 편찬, 『공민교육대계』, 1932, pp. 6~7. 김정인(2012), 위의 논문, p. 115에서 재인용.

20) 이상선(1950), 위의 논문, p. 144.

21) Tilly, Charles. “Where Do Rights Come From?” Theda Skocpol, George Ross, Tony Smith, and Judith Eisenberg Vichniac eds. *Democracy, Revolution and Hist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pp. 61~63.

아니라 서구의 시민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란이나 봉기가 아니라 근대적 시민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난 뒤의 성찰적 회고가 아니라 당시에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4·19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서구정치사에서 전제정치 내지 절대왕정을 타도한 것이 다름 아닌 시민민주혁명이고 보면 자유당의 전제적인 신절대주의 정치를 타도한 4·19는 바로 시민민주혁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²²⁾

또한 후세의 연구자가 ‘4월 혁명을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터져 나온 시민혁명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한 기념비적 사건’²³⁾으로 기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는 4·19가 지금까지의 역사 중 처음으로 참여하였던 주체들의 일정한 승리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당시까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은 8·15와 6·25 그리고 4·19였다. 하지만 앞의 두 사건이 냉전이라는 세계사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주어졌고 그 힘에 의해 진행되었던 사건이라면, 4·19는 명확히 내부에서 추동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²⁴⁾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이나 3·1운동과 달리 4·19는 구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결정적 차이를 갖고 있다. 적어도 5·16 쿠데타가 발발하기 전까지 학생과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구체제를 무너트리는데 성공하였다는 당대의 승리감과 후세의 평가가 프랑스 혁명의 이미지와 쉽게 중첩됨으로써 4·19가 한국의 시민혁명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4·19와 프랑스 혁명의 중첩된 이미지는 주체와 진행과정, 결과가 갖는 중대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22) 신상초, “이승만 폭정의 종언.” 『사상계』, 1960, p. 86.

23) 정근식·권형택, 『지역에서의 4월 혁명』, 선인, 2010, pp. 28~29.

24) 김윤식, “4·19와 한국문학,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사상계』, 1970, p. 334.

혁명은 당장의 성과보다 그것의 전개과정과 남기는 상징적 의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4·19는 당연한 민중의 혁명이라고 규정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걸었던 프랑스 혁명이 로베스피에르의 처형과 함께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 그러하다.²⁵⁾

4·19와 5·16을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하고 위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생각할 때 4·19는 혁명의 제1단계인 민중반란에, 그리고 5·16은 테르미도르의 반동처럼 혁명의 제2단계인 급진파의 쿠데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4·19는 학생층을 비롯한 지식층이 취약한 계급에 대신해서 쫓겨하여 신질대주의를 타도한 시민혁명의 첫 단계였다고 하겠다.²⁶⁾

4·19를 시민혁명으로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1987년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항쟁이라는 점 때문이다. 시위의 공간적 분포로 보면 4월 혁명은 서울이라는 특정 공간에서의 저항을 넘어서 전국 각지의 지방 도시에서 분출하였는데, 특히 ‘여촌야도(與村野都)’의 정치지형과 대체로 중복되었다. 이러한 전국성과 도시성으로 인해 4·19는 3·1 운동이나 해방 후 반체제운동과 달리 시민혁명의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4·19를 통해 시민과 시민혁명이라는 단어는 소수 엘리트나 지식인의 전문 담론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민주화 단계’²⁷⁾에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의무와 권리의 형식적 행위자이거나 행정단위의 주민이라는 수동적 공민 개념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낡은 질서에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모색하고자 하는 근대적 주체로서 시민의 이미지가 적극 부상하였다.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투쟁을 통해 권리를 되찾은 근대적 개인이자 대표적인 시민으로 부상하였다. 이어령은 이들을 제3세대라 부르면서 “전쟁이 아니라 4·1의 체험을 몸소

25) 천관우·길현모, “4·19 혁명의 현대사적 평가.” 『창조』, 1972, p. 122.

26) 차기벽, “4·19 과도정부 및 장면 정권의 의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13집, 1975, p. 154.

27) 벨빈 리더 저 송승철·김용수 역,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소화, 2010, p. 79.

주인으로 겪었던 주체성을 지닌 시민들”로 호칭하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인식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문학에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이다. 그는 1960년대의 한국문학을 4·19의 성공과 좌절로 독해하고 있다. 4·19의 성공이 시민의식 특히 젊은 지식층의 각성에 의한 참여문학에 의 열의, 전통의 문제, 리얼리즘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낡은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을 낳았다면, 4·19 정신의 위축과 변질의 시기로서 1960년대는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온 시민의 힘의 퇴조와 새로운 소시민의식의 팽배라는 후유증을 낳았다는 것이다.²⁹⁾ 리얼리즘에 근거한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민족문학과 민중문학론으로 정립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근대적 주체로서 공민 개념의 소멸과 시민 개념의 정립은 아무런 도전 없이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국에서 시민 개념의 발전은 좌파와 우파로부터 끊임없는 이중의 도전을 극복한 결과였다. 해방 이후 장기간 통치하였던 권위주의 우파 세력들은 서구와는 다른 시민 개념의 재구성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일제의 교육칙어를 본 딴 국민교육헌장의 반공시민교육이나 유신체제 하의 새마을정신교육은 관 주도 시민 개념의 대표적 사례이다.³⁰⁾ 반면, 식민 시대 이래로 좌파 진영에서는 시민 개념의 모호성과 관념성을 비판하면서 계급과 민중 개념을 선호하였다.³¹⁾ 코젤렉의 용어를 빌자면, 한국에서 시민 개념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운동의 급성장과 연이은 촛불시위의 주체로서 자율적 시민이 강조되면서 공민, 민중, 인민, 대중 등 경쟁적 개념어들을 제치고 최종 안착하였다.³²⁾

28) 이어령, “제3세대.” 『중앙일보』, 1966, p. 261.

29)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pp. 70~75.

30) 황병주,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15호, 2005.

31) 김세균, “계급 그리고 민중, 시민, 대중.” 『진보평론』 통권 20호, 2004.

32) 안착기의 보다 일반적 번역은 말안장(Sattelzeit)이다. 말안장에 대해 코젤렉은 어떤 개념이 더 이상 번역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유사 개념들과 구분되며, 특히 현재의 의미로 확실하게 정립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갑, “말안장 시대의 운동 개념.”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p. 32.

Ⅲ. 일본의 공민 개념

한국과 일본의 공민 개념의 유래와 배경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근대 일본에서 공민은 지방자치의 담당자로서 시정촌(市町村)의 유권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민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지방의 주민교육을 의미하였다.³³⁾ 일본에서 공민 교육의 기원이 러일전쟁 후의 지방개량운동 즉 ‘自治民育運動’이라는 점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 지방개량운동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루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회 등 지역 결사체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와 의식계몽을 목적으로 전개된 운동이었다. 독일의 실업보습교육과 국민교육의 영향을 받아 문부성이 국가에서 필요한 국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 공민교육을 점차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공민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던 문부성과 내무성은 1915년 大正4년 훈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최초의 공식적인 청년정책으로 ‘건전한 국민, 선량한 공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성립 계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오모리 테루오(大森昭夫)는 지방개량운동과는 관계없이 1893년 실업보습학교 규정의 개정으로 지역사정에 맞는 교과목의 신설이 가능해져 공민교육이 태동했다고 한다. 나카노 테츠지(中野哲二)는 공민교육이 지방개량운동 과정에서 실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시정촌 공민의 교육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공민교육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요구와 국가정책의 요구가 결합되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처럼 일본에서 공민은 애초에는 국민보다는 자립적이고 자치능력이 있는 주민을 뜻하는 것이었고, 공민 교육 역시 ‘자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립적인 공민 또는 정촌 자치의 중심인물 양성에 주안점이 있었다.³⁵⁾

33) 김종식, “미래의 국민과 공민 사이.” 『일본역사연구』, 2004, p. 193.

34) 김종식(2005), 위의 논문, pp. 195~199.

35) 공민 개념이 명치·대정 시대에 낙후된 지역개발과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던 지방개량운동이 모태라는 사실은 법제화된 기구인 공민관(公民館)의 현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그러나 공민의 내용과 공민교육의 변화 계기가 외부로부터 주었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 원래 일본에서 공민은 총량한 臣民을 의미하였다.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 즉 192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공민과는 이를 목표로 실업보습학교와 중등학교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근대화의 진전 속에 헌법의 공포, 의회 개설, 지방자치의 확대 등에 따라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를 뿐인 신민의 육성만으로는 국민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다이쇼 시대(1916-1926)의 민주화, 쇼와 시대(1926-1989) 초기의 세계 공황, 전쟁을 통한 급속한 영토 팽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문제 역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요구하였고 그 관건은 교육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때 일본에서 새로운 인간상, 즉 국정에 참여하는 신민을 공민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를 기르기 위한 교과로 등장한 것이 공민이었다. 이처럼 1920년대와 30년대 초까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국제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의 서구 이념의 강제 속에서 신민을 대체한 근대 시민의 상으로 공민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군국주의가 고조되면서 국민된 자로서 신민의 봉공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일본주의 교육과 ‘천황과 국가는 일체이다. 천황 황실은 일본민족의 아버지고 宗家이다. 천황이 즉 국가이다.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皇道精神이 강조되면서 공민 개념은 약화되었고 그 자리를 황민 개념이 대체하였다.³⁶⁾

미군정과 더불어 일본의 공민 개념에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 미군정은 사회과의 신설을 통해 종래의 정치적, 경제적인 내용에 민주적 태도를 동시에 육성시키려 하였다. 1946년 문무성은 ‘신일본 건설의 교육방침’을

공민관은 기초단체 주도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려 18,816 시설에 고용된 직원 수가 무려 57,896명에 달한다. 일본 공민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야마다 노리히로. “일본의 公民館 행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4. 8, pp. 929~952.
36) 김정인(2012), 위의 논문, pp. 118~119.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군국주의의 불식, 평화국가의 건설, 과학적 사교력의 육성 등을 목표로 하여 민주주의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체의 호지(護持)를 강조하고 있어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철저한 추방을 요구하던 당시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부성은 또한 동년 10월 ‘공민교육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공민교육을 쇄신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민과는 구교육의 중심교과였던 수신과를 폐지하였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적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민주시민보다는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반공 논리를 실천하는 국민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강하였다.³⁷⁾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인간상으로 공민을 제시하였던 4차 개정이다. 여기서 공민이란 학습지도요령 공민분야의 목표에 ‘국가주권을 담당하는 공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쟁전 공민(皇民)과는 다른 것으로 표명되었지만 그 실제 내용은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일본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차 개정 직전에 이루어진 1966년 문부대신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출한 <후기 중등교육의 확충정비에 대해>라는 답신의 ‘기대되는 인간상’ 부분에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 천황에의 경애 등 복고주의적 성향을 뚜렷이 보였다는 점도 이러한 공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공민의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은 최근 교과서 문제로 한·일 갈등을 심화시킨 『新しい公民教科書: 新訂版』(2005)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새역모’ 회장이자 이 책의 대표 집필자인 야기 히데츠구(八木秀次)는 ‘특공대원의 유서’라는 난에서 ‘유가(遺歌)’를 소개하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연속성을 지키는 특공대원을 미화했다. 야기는 특공대원은 설령 자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조상이 지키고 전해준 국가를 어떻게든 지켜

37) 이경호, “일본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07, p. 41.

38) 황혜숙, “日本社會科教育의 理念變遷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 432.

야 한다는 결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국가를 자식과 손자세대에 전해야한다는 의지를 확립시킨 모범적 인간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온 기존의 공민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공민’,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는 ‘공민’의 육성을 피력하고 있다.³⁹⁾

이처럼 ‘국가 공민’이라는 어색한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시민보다 공민이 일찍이 널리 사용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민이나 시민사회는 자유, 민주, 인권,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근대이행기에 서양에서 인위적으로 수입된 개념이다. 따라서 그 개념들은 미래의 규범적 가치로 설정되었고 이의 달성이 근대의 완성이로 받아들여졌다. 패전 이전까지 그러한 개념들은 현실과 유리된 서지학의 세계에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시민 개념의 지연은 일본의 사회과학 전통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압도적 비중이라는 지적 전통과 연관이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공적영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의 강한 연계를 떠올리기 때문에 시민권이나 시민사회, 시민활동이라는 말을 금기시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1960년대까지도 일본의 시민사회론은 사회운동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급진적이고 전투적 성격을 함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최근 NGO, NPO라는 용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과거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것과의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⁴⁰⁾

39) 이규수, “일본의 공민교과서 왜곡 구도와 우경화.”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18호, 2006, pp. 303~335.

40) 권혁태,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권혁태 외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2003, pp. 188~191.

IV. 중국의 공민 개념

1. 도덕과 규율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공민

일본의 공민 개념이 지방자치와 국가에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중국에서의 공민은 인격과 예절 등 개인의 도덕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의 공민교육은 중화민국(1912) 성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화민국 초기 소학교의 수신과와 존화독경(尊孔讀經)에 의해 이루어진 공민교육은 정부가 집중 지원하였던 국민양성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소원배(蘇元培)의 신교육방향과 중화민국 교육 방침이 제시한 국민상은 자유와 평등 및 책임, 준법, 질서의식 등으로 훈련된 근대 공민이었다. 이를 실현시킬 소학교의 수신교과는 개인 덕목을 기초로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공민의식과 자질을 가르쳤고 전통과 도덕은 변용 혹은 청산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원세개의 집권 이후 帝制(제제)운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존화독경과 유교윤리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족중심의 윤리관에 토대를 두었던 사회심리와 서구의 신사조가 전환기에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을 위한 인적, 물질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소수의 해외유학파에 의해 서구의 제도와 사상이 급속히 이식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어쨌든 민국 성립기의 국민상은 공민도덕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의범절과 준법질서에 의한 공공성을 중시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자유, 평등과 공민의식을 갖춘 공화국민으로서 서구와 차이가 없었지만 서양사회에 비해 개인수양을 앞세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관계유지에 필요한 의무와 권리를 강조하는 등 전통적 윤리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교육방침도 형식적으로는 忠君, 尊孔 등 유교적 색채가 없어졌지만 공화제에 부응하기 위한

선언일 뿐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유교윤리가 힘주어 교육되었다. 더구나 원세개의 집권 이후로는 교육전반에 보수화 경향이 팽배하였다. 결국 민국성립기의 계획된 국민과 교육을 통해 길러진 국민은 서로 달랐고 민권의 소유자이자 권한의 행사자로서 공화 국민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후 국민당의 공민교육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20년대 국민당 정권의 공민관(公民觀)과 공민교육의 목표는 전통과 과거의 단절을 강조하였던 ‘政治的 公民’을 지향하였다. 1927년과 1928년에 당화교육(黨化教育)을 설명한 책들은 모두 반제, 반군벌을 강조하며 혁명적, 정치적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했고 교육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구성되었다. 당화교육의 목표는 혁명이념의 전파와 봉건·군벌·제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적 공민의 형성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국민당의 교육목표는 혁명과 전통의 공존을 모색하는 建設的 公民의 육성에 있었다. 1928년 국민당은 북벌의 완성과 訓正을 선언하였다. 교육의 초점을 건설로 방향을 돌리고 당화교육이 제도화되면서 삼민주의를 익힌 공민은 투쟁하는 공민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 당화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하는 공민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좋은 공민이란 교육을 통해 인격과 품성을 고양시킨 국민이다. 따라서 정신교육과 전통도덕의 함양이 강조되었으며, 삼민주의와 충효, 인애, 신의, 화평이 강조되었다.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民族的 公民이 강조되었고 전통과 도덕의 중요성이 부활되었다. 만주사변의 발발과 더불어 민족주의 정신과 전통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경제건설과 교육의 중요성이 역설되었다. 1932년 ‘소학공민과정 표준’은 중국민족 고유의 도덕을 발양하는데 충, 효, 인, 애, 신, 의, 화평을 중심으로 삼아 기타 각 민족의 미덕을 채용하여 건전한 공민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936년의 ‘초급중학공민과정 표준’ 역시 학생이 중국 고유의 도덕의의를 이

41) 이재명, “중화민국(中華民國) 성립기(1912~1915) 교육계의 공화국민(共和國民) 만들기 - 공민도덕 교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2007, p. 195.

해하고 신생활운동의 규율을 실천하여 민족부흥의 도덕적 기로를 확립한다고 정하였다.⁴²⁾

중국의 공민 개념은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996년 10월 제14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에 필요한 약간의 중요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를 새로 공포했다. 이 문건은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사상 통제 및 도덕적 자질의 제고, 그리고 사회주의 신념과 애국심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는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자 21세기 인간형으로서 ‘사회주의 공민’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① 사회주의 도덕의 수립, 발양 ② 사회주의 민주, 법제, 기율 교육의 강화 ③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제고라는 세 과제를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사회주의 공민은 사회주의 신념 및 애국심, 현대 과학문화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도덕의 함의를 체득한 인간형이라는 것이다.⁴³⁾

이러한 중국의 공민관은 서구의 시민관과 여러 점에서 중대한 차이를 갖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공민의 윤리적 기초를 유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교의 비판적 계승이라는 점을 본다면 사회주의 도덕 혹은 숭고한 공산주의 도덕을 체득한 사회주의 공민은 필연적으로 전통, 특히 유교적 전통의 텃밭에서 자양분을 획득한 인간이다. 즉 사회주의 공민은 중국 인민 개개인의 자발적 의지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자체의 훈육성과 당위성에서 석출된 관제적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이념을 실천할 주체로서의 인민이 오히려 물질문명을 건설하는 데 도덕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객체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회주의 공민은 정권 혹은

42) 이병인, “國民黨政權의 公民觀과 民族 傳統,”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5집, 2007, pp. 37~47.

43) 윤택희, “中國의 ‘社會主義 公民’과 儒敎,”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4호, 2000, pp. 184~185.

체제 이데올로기의 확립이라는 관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개인의 창의성이 나 개성을 제한하고 심지어 말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⁴⁴⁾

2. 중국식 시민사회와 시민 개념의 대두

중국에서 공민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고한 헌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 헌법 제2장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인데, 여기에는 공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관한 24개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쟁은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서 시민의 대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시민사회 논의의 등장 배경은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1989년의 '6.4 천안문 사건'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놀라운 속도의 경제발전과 그것의 필연적 부산물인 수많은 민간조직과 사회단체의 출현이었다. 정부에 등록된 민간조직 수는 2008년 현재 38만 6천 개에 달했으며 그중 사회단체는 21만여 개, 민영 비기업단위는 17만 4천여 개에 달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중국사회의 변화와 대전환을 두고 중국의 중앙편역국 부국장이자 비교정치 및 경제연구센터 소장인 위커핑(俞可平)은 2008년을 '시민사회 원년'이라 칭하기도 했다.⁴⁵⁾

그렇지만 민간조직과 사회단체의 출현이 서구의 경험과 동일하게 자율적 시민의 출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중국에서 사회단체의 인사와 역할은 대부분은 당과 정부에 의해 부여되고 있으며, 단체의 독립적인 이익을 견지하려는 회원의 의식과 결집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다.⁴⁶⁾ 서구식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중국을 해석하는데 반대하는

44) 윤택희(2000), 위의 논문, p. 201.

45) 김재관, "21세기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탐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1호, 2011, p. 118.

46) 김현중, "中國市民社會의 발전 可能性에 대한 展望." 『중국학연구』 제15집, 1998, p. 115.

보다 흥미로운 설명은 중국이 혁명과 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론과 일당체제에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중국의 독특한 ‘민주’에 대한 해석 즉 누가 지배하는가(who governs)가 아니라 실제 정책의 결과가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가를 강조하는 산출(out-put)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해석이다.⁴⁷⁾ 따라서 자유, 시민사회, 민주를 강조하는 서구적 시각은 효율적 국가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해 공공권위를 제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되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중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협력과 공생관계에 방점을 둔 ‘국가주도형 시민사회’, ‘최소주의 시민사회’, ‘사회주의 시민사회론’, 선치(good governance) 등 다양한 접두사가 붙는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론’이 제기되어 왔다.⁴⁸⁾

그러한 한계와 독자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시민과 시민사회 담론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중국 내 역동적 시민사회 세력으로 부상하는 있는 주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세력은 바로 주택소유자인 ‘업주(業主)’라는 자치조직이다. 이 업주들이야말로 도시 내 일종의 ‘시민’ 즉 부르조아 신흥중산층이었고 이제 그들의 재산권 수호운동(維權活動)은 시민사회의 부상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주화 전망을 밝게 하는 척도이다.⁴⁹⁾ 이정남 역시 중국의 현급 이하 행정단위 및 기층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대표회의와 촌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및 시민권 의식의 발전이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시민권 의식은 국가에 대한 저항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서구와 달리 지역수준에서의 참여의식과 경제적 권익의식이 중심 내용이라는 차이를 갖고 있기는 하다.⁵⁰⁾

47) 이희욱, “중국식 민주에 대한 하나의 해석.” 『중국학연구』 제58집, 2011, pp. 329~330.

48) 이남주, 『중국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질』, 폴리테이아, 2007a.

49) 김재관, “중국도시 내 업주권익운동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2007.

50) 이정남,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005, p. 249.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공민 개념은 헌법적·제도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야기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치사회적·경제적 수준에서는 시민사회와 시민 개념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등 경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부재와 언론을 비롯한 공론장의 위축, 공산당의 엄중한 감독 등 정치의 폐쇄성은 자율성과 연대에 기초한 시민 개념의 발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에서 이제 절대적인 국가의 개입과 조절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조절·수용하려는 제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여 왔다. 후진타오 체제는 출범 이후 민본, 인권, 법치, 사유재산권, 시민조직을 강조하는 증량 민주(incremental democracy)를 제기하였다. 증량 민주주의 핵심은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점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하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원리 안에서 민주화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⁵¹⁾

시민의 개념이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립의 토대인 시장경제체제와 친화성을 갖는 개념이라면,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량 민주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민 개념이 발전할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법적 지위를 강조하는 공민과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 개념의 경쟁과 갈등이 잠복하고 있다. 중국의 진로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관’을 따를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의 선치에 기초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모델로 나아갈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삶의 질(민생)과 민주화는 거부할 수 없는 논리이며, 따라서 시민 개념의 지위와 역할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1) 이희옥(2011), 위의 논문, p. 334.

V. 북한의 공민 개념

북한의 공민 개념을 파악하기에 앞서 과학원출판사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1989)에 수록된 주요 개념을 살펴보자.

- 시민(市民) ① 시의 주민 ② 봉건사회에서 서울 백각전의 장사아치들(240)
 국가(國家) 현존 제도를 유지하며 다른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조직, 또는 이런 정치조직을 가진 나라(401)
 국민(國民)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406)
 공민(公民) 일정한 국가의 국정을 가지고 그 국가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권리를 가지면 헌법에 제정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민권(公民權) 일정한 국가의 공민으로서 가지는 모든 법적, 권리 의무의 총체(330)

북한 헌법에서는 주권의 소유자 또는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근로 인민대중, 인민, 공민을 혼용하고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보면 공민으로 통일되어 있다.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5장(‘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은 62조-86조까지 기본권과 의무 조항을 나열하고 있다. 『조선말사전』(1989)을 보면 북한에서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를 “현존 제도를 유지하며 다른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조직, 또는 이런 정치조직을 가진 나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착취적 대상을 암시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용어는 자국 인민에 대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아울러 시민 개념 역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 행정적 단위의 주민을 뜻할 뿐이다. 결국, 공민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주권의 담지자이자 행사자로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민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서는 공민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공민은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에 해당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남한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북한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남한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공민 개념이 지닌 본질적인 차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서 비롯된다. 즉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계급적 본질과 집단 우위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북한에서의 공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따라서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하는 북한 구성원의 지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을 헌법상으로 표현한 대표적 개념이 공민인 것이다.⁵²⁾

동아시아의 공민 개념이 ‘국가로부터 부여되고 조형(造型)된 관제 시민’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하나

52) 좌중훈, “북한에서의 헌법과 공민의 기본 권리의 의미.” 『안암법학』 2003, p. 56.

의 사례가 공민종교로서 기능하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원래 공민종교(civil religion)라는 개념은 어떤 사회의 이념적 신념이 종교적 차원을 지니는 것을 염두에 둔 루소의 개념으로서, 그는 공민종교에 의한 국가권력의 통합성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공민종교의 현대적 사례는 기독교의 특정 유파나 교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미국이 자주 거론된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의 주체사상 역시 공민종교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헌법에서는 수령의 사상을 국가적인 범위에서 유일 절대화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한 국가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모든 종교 활동과 종교자유를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전통종교를 관용하는 공민종교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을 국교국가(confessional state)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이다.⁵⁴⁾

최근 북한을 시민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실험적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북한에는 공식적 시민조직이나 비합법적 시민단체도 없지만 미디어 기기의 확산과 그를 통한 외부 정보유입의 결과로 시민사회의 맹아적 단계로 볼 수 있는 대화마당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또 다른 연구 역시 2002년 전격적으로 단행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암시장 등 2차 경제권의 형성, 지하신문의 제작 및 돌려읽기, 야학 등 비공식 채널에서 공부하기, 교회를 지지하는 등의 자율적 행위를 하여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 사회의 바깥에서 활동하는 제2사회가 본격 형성됨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국가-시민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⁵⁶⁾ 하지만 북한에 제2 사회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53) 조혜인(2009), 위의 논문, pp. 208~210.

54) 정대일, “북한의 종교정책 연구: 북한 국가종교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64집 2011, p. 157.

55) 현인애(NK지식인연대), “북한 시민사회 조사결과-북한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http://www.nkis.kr/data/board/nkisb301>

56) 최용환, “세계화시대 북한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손호철 외 『세계화, 국가, 시민사회』, 이매

있다. 북한의 경우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해 제2사회 및 2차경제로 나아갈 통로가 차단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우선주의나 선군주의 등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분석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⁵⁷⁾ 결론적으로 시민사회 조직, 역사적 경험, 산업화의 수준, 외부문화의 유입 가능성, 체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은 시민사회 논의가 북한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⁵⁸⁾

V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은 공민 나아가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가 가능한 천혜의 보고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시민은 동일한 기의를 내포하며 화자들 사이에 동일한 뜻으로 소통된다. 그것은 그들 국가가 과거에 계몽주의에 근간한 시민혁명을 거쳤으며 EU통합과 같은 현재의 동일한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공민은 여전히 상이한 기의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이들 국가에서 공민 개념이 여전히 시민 개념과 경합 중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과정 이전부터 이들 네 국가 모두 서구적 의미의 시민 개념 대신 공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공민의 의미는 근대국가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성원, 즉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민 개념의 등가물이다.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애초 시민의 뜻은 시정(市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정의 뜻은 원래 ‘인가가 모인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 상대(上代)

진, 2006.

57) 홍철,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제2사회 개념의 적용가능성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1집 1호, 2003.

58)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Vol. 41, No. 1, 2001.

에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이 말은 상점이나 점포가 늘어서 거리 또는 상인의 낮춤말인 장사치를 일컬었으며, 점차 후기에 이르러서는 궁성(宮城) 밑에 사는 백성이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서민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⁵⁹⁾ 아래는 국내에서 발간된 사전으로는 최초로 시민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語辭典 韓日辭典』(1920)인데, 여기에서는 시민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市民(시민) 명사. 市內에서 商業을 經營하는 人民(市井 시정아치)/ 537쪽.

市井(시정) 명사. 市民(시민)과 같다/ 538쪽.

이러한 이유로 애초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율과 참여를 전제한 서구의 시민에 근접한 용어는 시민이 아니라 공민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서구식 시민’보다는 ‘아시아적 공민’ 개념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서구에서 시민 개념이 갖고 있는 전복적 의미를 거세하고자 한 유교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이다. 이들 지역의 공민 개념에 내재한 강력한 공통점은 국가가 집요하게 도덕과 집단,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계몽주의적 관점’을 접합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기요시는 “공민이라는 용어는 메이지기(明治期)에 일본제국헌법이 제정될 때 국민과 시민을 합한 복합개념으로 쓰였으나 한편으로는 천황의 신민 즉 즉 황민(皇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⁶⁰⁾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한 연구자는 일본의 공민 개념에는 민에 대한 공의 우선성, 질서에의 복종의식 및 봉사의 절대화(滅私奉公),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간파하였다.⁶¹⁾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공민 개념에 내포된

59) 이성원, “고대 중국의 ‘시정(市井)’과 그 공간(空間).” 『중국학보』 (통권 58권), 2008, pp. 173~181.

60) 高山次嘉, 『社會科教育の回生』, 教育出版, 1996, p. 91.

61) 김경옥, “전후 일본교육에서의 ‘公’의 이데올로기성: 초중학교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이러한 성격들은 일본의 예외적 특성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경로를 반영한 지역적 보편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동아시아 공민 개념의 비교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귀중한 사실은 체제의 차이가 언어의 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인민과 마찬가지로 공민 역시 체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언어이다. 북한과 중국에서 인민이 주권의 원천이며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이해되는 추상적이며 정치적, 선언적인 개념이라면 공민은 그와 달리 그 권리와 의무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는 법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⁶²⁾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에서는 자본제 국가의 착취적 성격으로 인해 국민이, 시민사회의 기회주의적·부르주아적 성격 탓에 시민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공민 개념의 확고하고도 유일한 지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혁명 또는 민주화운동의 강도와 지속성의 차이가 공민과 시민 개념의 분화 정도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직후에 제정되었던 교육법 제1조(1949.12.31. 법률 제86호)는 다음과 같이 교육이념을 명시하였다.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와 평생교육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제정된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5437호)에서는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구』, 2007, pp. 147~148.
62)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호), 2009, p. 84.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념에서 명시된 공민이 시민으로 바뀌는 데 무려 반세기가 걸렸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사적 과정이나 시류에의 편승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 집단의 부단한 담론 투쟁의 결과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진행된 공민에서 시민으로의 변화는 코젤렉의 용법에 따르자면, 정확히 ‘개념의 정치화’(Politisierung)에 해당되는 몇진 사례라 할 수 있다. 4·19의 민주시민, 80년 5월의 광주시민, 87년 6월 항쟁의 민주시민, 최근의 촛불시민은 왜 한국에서 공민이라는 관제 언어가 소실되고 그 자리를 저항과 참여의 주체를 상징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대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citizen을 시민으로, civil society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번역이며, 공민(公民)과 공민사회(公民社會)가 바른 해석이라는 주장을 관념에 치우친 반역사적·반정치적 해석으로 거부한다. 코젤렉의 개념사 또는 비판적 개념사의 전제는 개념이 중립적이거나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담론의 주체인 행위자들의 전략과 소통에 따라 재구성되어진다는 것이다. 시민보다 공민이 옳은 해석이라는 주장은 개념이 시간화, 민주화, 이데올로기화, 정치화 단계를 거쳐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개념의 역사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한 그것은 공민에서 시민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국가와 사회집단 사이의 부단한 담론 투쟁과 상호작용을 외면한 논리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곽한영,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 -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법교육학회, 2010.
-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 권보드레, “동포와 역사적 감각: 1900-1904년 동포 개념의 추이.”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 권혁태,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권혁태의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2003.
- 김경옥, “전후 일본교육에서의 ‘공’의 이데올로기성: 초중학교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2007.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호, 2009.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김세균, “계급 그리고 민중, 시민, 다중.” 『진보평론』 통권 제 20호, 2004.
- 김윤식, “4·19와 한국문학,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사상계』, 1970.
-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통권 122호, 2012.
- 김재관, “중국도시 내 업주권익운동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2007.
- 김재관, “21세기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탐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1호, 2011.
- 김종식, “미래의 국민과 공민 사이-1915년 청년단체 훈령의 청년상.” 『일본역사연구』 . 일본사학회』, 2004.
- 김현중, “中國市民社會의 발전 可能性에 대한 展望.” 『중국학연구』 제15집, 1998.
- 멜빈 릭터 저, 송승철·김용수 역,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소화, 2010.
- 문교부, 『(새로운)정치와 사회 (공민 I)』, 일한도서출판사, 1956.
- 문교부, 『(국민학교) 사회생활 :교사용/3』, 문교부. 1957.
- 문세영, 『원본 조선어사전-초판본』, 조선어사전간행회, 國語國文學叢林(1988), 1938.
- 박근갑, “말안장 시대의 운동 개념.”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11.
-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10.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 손정목, 『한국 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 신상초, “이승만 폭정의 종언.” 『사상계』, 1960.

- 윤택희, “中國의 ‘社會主義 公民’과 儒敎.”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4호, 2000.
- 이경호, “일본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07.
- 이규수, “일본의 공민교과서 왜곡 구도와 우경화.” 『지역과 역사』, 제18호, 2006.
- 이남주, 『중국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질』, 폴리테이아, 2007.
- 이병인, “國民黨政權의 公民觀과 ‘民族 傳統’.”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5집, 2007.
- 이상선, 『(중등 사회 생활과) 경제생활 : 공민부분/3학년용』, 探求堂, 1950.
- 이성원, “고대 중국의 ‘시정(市井)’과 그 공간(空間).” 『중국학보』, 통권 58권, 2008.
- 이어령, “제3세대.” 『중앙일보』, 1966.
-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Vol. 41, No.1., 2001.
- 이재령, “중화민국(中華民國) 성립기(1912~1915) 교육계의 “공화국민(共和國民)” 만들기 - 공민도덕교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2007.
- 이정남,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005.
- 이희옥, “중국식 민주에 대한 하나의 해석.” 『중국학연구』 제58집, 2011.
- 정근식·권형택, 『지역에서의 4월 혁명』, 선인, 2010.
- 정대일, “북한의 공민종교: 주체사회주의의 기원, 형성,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6집, 2003.
- 정대일, “북한의 종교정책 연구: 북한 국가종교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64집, 2011.
- 조혜인,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 나남, 2009.
- 좌종훈, “북한에서의 헌법과 공민의 기본 권리의 의미.” 『안암법학』, 2003.
- 차기벽, “4·19 과도정부 및 장면 정권의 의의.” 『사회과학』 13집, 1975.
- 천관우·길현모, “4·19 혁명의 현대사적 평가.” 『창조』, 1972.
- 최배근,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公民’의 역사적 성격.” 『경제와 사회』 19호, 1993.
- 최용환, “세계화시대 북한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손호철 외 『세계화, 국가, 시민사회』, 이매진, 2006.
- 최재희, 『(중등 사회 생활과) 공동생활 : 공민부분/1학년용』, 探求堂, 1950.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2005.
- 현상윤, 『(사회생활과) 중등공민 : 공동생활/I』, 民衆書館, 1955.
- 현인애, “북한 시민사회 조사결과-북한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http://www.nkis.kr/data/board/nkisb301>.
- 홍 철,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제2사회 개념의 적용가능성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1집 1호, 2003.

- 황병주,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15호, 2005.
- 황혜숙, "日本社會科教育의 理念變遷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高山次嘉. 『社會科教育の回生』, 教育出版, 1996.
- Ball, Terence.,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Blackwell. 1988.
- Goldstone, Jack A., "Introduction: Bridging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s." Jack A. Goldstone eds. *States,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Kipnis, Andrew., Luigi Tomba and Jonathan Unger (eds).,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nd politics: Urban China* (vol.3). Routledge, New York. 2009.
- Tilly, Charles., "Where Do Rights Come From?" Theda Skocpol, George Ross, Tony Smith, and Judith Eisenberg Vichniac eds. *Democracy, Revolution and History*. Itah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White, Gordon., *In search of civil society : market reform and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New York : Clarendon Press. 1996.

ABSTRAC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in East Asia States

Jeong, Sang-Ho
(Seowon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of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could elucidates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modernization in East Asia states which are very different in the regime and developmental process. In Korea,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has been absorbed into the concept of citizen through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zation. By contrast,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in North Korea and Japan have an abundance of us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n the one hand, the concept in China has been faced to the challenge of citizen concept caused by *laissez fair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close attention to dynamic interaction between authoritarian states and democratization which made creation and extinction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Keywords: Concepts of Public citizen, East Asia, History of Concept, Koselleck, Civil Society

투고일: 2012년 7월 1일, 심사일: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4일